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2011드단○○○○○ 이혼등
○○○ (70년생 남자)
주소 부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 고 ○○○ (74년생 여자)
주소 부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애

사 건 본 인 1. ○○○ (2005년생 여자)
2. ○○○ (2010년생 남자)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 ○○○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2. 7. 19.부터 2014. 7. 31.까지 월 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5. 11. 2.까지 월 6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30. 3. 11.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16:00까지.
 - 나. 사건본인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생활 중 여름방학 동안 5박 6일간, 겨울방학 동안 5박 6일간.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각은 첫날 11:00이고, 종료 시각은 마지막날 16:00이다.
 - 다. 설(음력) 연휴 중 1박 2일간,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각은 첫날 14:00이고, 종료 시각은 다음날 10:00이다.
 -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면접교섭은 위 가.항의 면접교섭과 별개이고, 사건본인들의 동의 아래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 마. 사건본인들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면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바. 원고는 면접교섭 시작 시각에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주

고, 피고는 면접교섭 종료 시각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준다. 만일 사정에 의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가족, 친지로 하여금 대신 데려다 주도록 하여야 한다.

사. 원고 또는 피고가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정하기로 한다.

6.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성년에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 9, 11, 12호증, 갑 제14, 19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2, 3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3호증의 1, 3, 5,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제

31호증의 1,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5.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2. 6. 7.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딸인 사건본인 ○○○과 아들인 사건본인 ○○○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부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얻어 생활하였는데, 이 4,500만 원은 결혼할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3,000만 원과 피고가 가지고 온 예단비 1,500만 원을 합하여 마련한 돈이다. 이후 원고는 2006. 6. 15. 위 아파트를 5,26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6.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월급 평균액은 2002. 9.부터 2003. 8.까지 기간 동안 2,053,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4. 8.경까지 기간 동안 1,943,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5. 8.까지 기간 동안 2,276,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6. 8.까지 기간 동안 2,376,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7. 8.까지 기간 동안 2,500,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8. 8.까지 기간 동안 2,680,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9. 8.까지 기간 동안 2,823,000원, 그 다음달부터 2010. 8.까지 기간 동안 2,793,000원, 그 다음달부터 2011. 4.까지 기간 동안 3,022,000원 정도 되었다.

라.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는데, 몇 차례 피아노교습 등을 나간 바 있다. 그리고 틈틈이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직업전문학교에 나가서 캐주얼웨어 및 패션마케팅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패션디자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고, 천연비

누 테크니션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03.경부터 2005. 초경까지 암웨이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거래 합계액이 2,500만 원 정도 되었다.

마. 피고는 혼인생활 중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생명보험의 무배당○○웰빙건강보험(종합보장만기환급형) : 가입증서번호 ○○○○○○, 계약일 2005. 3. 31., 월보험료 59,700원, 2011. 7.까지의 납입총보험료 4,596,900원.

(2) ○○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탄생기쁨플러스보험 : 계약번호 ○○○○○○, 계약일 2009. 7. 10., 월보험료 30,000원, 총납입보험료 720,000원.

(3) ○○화재해상보험의 보험 : 증권번호 ○○○○○○, 계약일 2009. 11. 20., 월보험료 43,200원, 총납입보험료 945,220원.

(4) 그 외에 보험계약자가 ○○○로된, 증권번호 ○○○○○○, 계약일 2009. 11. 20., 월보험료 43,200원, 총납입보험료 945,220원의 ○○화재해상보험의 보험도 있다.

바. 피고의 이모인 ○○○는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생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 : 계약번호 ○○○○, 계약일 1999. 6. 23., 월보험료 32,000원. 이 보험의 2011. 8. 29. 기준 예상해지환급금은 3,005,272원이다.

(2) 무배당듬뿍저축보험(2종) : 계약번호 ○○○○, 계약일 2001. 1. 27., 연보험료 6,078,100원. 이 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8. 2. 19. 52,997,487원의 보험금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다. ○○○는 이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무배당재테크플랜 적립생활 : 계약번호 ○○○○, 계약일 2001. 10. 29., 월보험료 130,000원. 이 보험은 해약되어, 2005. 8. 9. 5,624,405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4) 무배당○○연금보험(적립형) : 계약번호 ○○○○, 계약일 2003. 3. 8., 월보험료 300,000원. 이 보험은 해약되어, 2004. 6. 1. 2,427,307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5) 무배당○○연금보험(적립형) : 계약번호 ○○○○○○, 계약일 2003. 5. 30., 월보험료 300,000원. 이 보험은 해약되었고, 그 해약환급금이 11,396,564원인데, 그 중 11,346,531원이 2006. 12. 4.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후 2006. 12. 8. 그 중 11,026,189원이 ○○대출상환에 충당되었다. 이 ○○대출은 그 전에 ○○○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6) 무배당우리아이변액교육 1종 적립 : 계약번호 ○○○○○○, 계약일 2008. 2. 22., 월보험료 150,825원. 이 보험은 해약되어, 2011. 7. 13. 5,835,281원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되었고, 그 직후 다시 ○○○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사. 원고는 2011. 2.경 우연히 피고 명의의 ○○생명 보험 관련 서류를 발견하였고, 이 때 비로소 바.항의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편, 그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 ○○○ 명의로 2,6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었다[다만, 원고는 2011. 6. 9. 그 원리금 전액(26,357,946원)을 인출하여, 그 명의의 마이너스대출 계좌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아. 원고는 2011. 2.경 피고로부터 그때까지 모은 저축액이 2,6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듣고서, 그 액수가 적은 사실에 놀랐으며, 또한 바.항과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수수된 사실을 두고, 피고가 재산을 빼돌려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 원고는 2011. 5. 1. 혼인생활 동안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는 부부싸움 후에 혼자 친정집으로 갔다.

차. 피고는 2011. 5. 2. 피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전화로 원고가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 아버지가 원고에게 호통을 치는 등으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집에 도착하여, 원고, 원고 어머니와 피고, 피고 어머니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모두가 직전의 전화 언쟁과 피고의 재산 의혹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카. 그러던 중인 2011. 5. 중순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 어머니가 원고와 피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원고 어머니가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일일이 간섭하는 등 원고,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대립과 긴장은 더욱 깊어갔다.

타. 피고는 2011. 5. 24. 14:00경 집에서, 원고 어머니가 사건본인 ○○○를 안은 채 피고에게 사건본인 ○○○를 주지 않기 위하여 버티자, 서로 사건본인 ○○○를 붙잡고 밀고 당기던 중 원고 어머니를 밀쳐 원고 어머니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파. 원고는 2011. 6.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1. 6. 28. 집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다.

하. 피고는 2011. 7.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이때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거. 피고는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①원고 어머니가 2011. 5.경 집에 들어와 살면서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집에서 내쫓았고, ②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2011. 6. 9. 사건본인 ○○○ 명의의 적금 2,600만 원 상당을 해약하여 은닉하였으며, ③원고 어머니가 피고의 결혼패물을 전부 빼앗아 갔는데, 이와 같이 원고에

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채권 3,000만 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중 일부 7,600만 원', '자녀들 양육비 채권 2,4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2011즈단○○○)은 2011. 7. 2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나.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너. 피고는 2011. 7. 26.경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짐을 챙기기 위하여 집으로 찾아갔는데, 원고 어머니가 억지로 기저귀 가방을 가져가라며 그 가방에 짐을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옷가지들을 꺼내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인 원고 어머니의 상의 스웨터를 잡아당겨 재물을 손괴하였다.

더. 원고 어머니는 2011. 7. 말경 타.항 및 너.항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3. 8. 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 20.경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보내주었다.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키우고 있다.

2. 이혼 청구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생명 보험 관련 서류를 발견하고 그동안 피고가 관리해 온 통장 등 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로서는 설령 그 돈의 출처가 모두 ○○○라고 하더라도, ①그 보험료 액수가 월 합계액 최대 912,825원 및 이와 별도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6,078,100원에 이르고, 기간만료 또는 해약 등의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도 합계 78,281,044원(이는 원고의 최근 연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

이다)에 이르는, 이와 같은 고액의 보험이 피고 명의로 존재한다는 사실 및 ②피고가 그와 같은 보험에 있어서의 명의를 ○○○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보험 중 일부는 결혼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지만, 보험료 및 보험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부분도 설명의 범위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 생명 보험의 규모와 내역이 밝혀지게 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에 덧붙여,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 어머니가 원고와 피고 집에 들어와 지내면서,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피고가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별거기간 중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며 여전히 이혼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로서도 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서로를 존중·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3. 위자료 청구 판단

원고는, 암웨이 탐닉 등의 과소비, 재산의 반출과 은닉, 원고 어머니 폭행, 성관계 거부, 아침식사 미대접, 불임사실 은닉, 가출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보조양육자의 존재, 특히 원고가 2012. 1. 20.경부터 사건본인들을 키우고 있고, 사건본인 ○○○이 원고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5. 양육비 청구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12. 7. 19.부터 약 2년이 지난 2014. 7. 31.까지 월 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5. 11. 2.까지 월 6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30. 3. 11.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6.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판사 이준영 _____